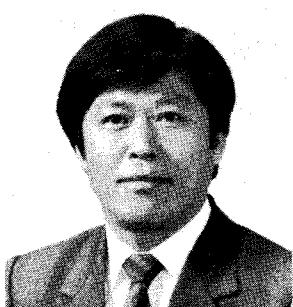


日本의 特許管理 教育考察(4)



安鍾喆

〈特許廳 指導課 事務官〉

目 次

- I -1 工業所有權制度의 基礎知識
 - 1. 特許制度의 基礎知識
 - 2. 實用新案制度의 基礎知識
 - 3. 意匠制度의 基礎知識
 - 4. 商標制度의 基礎知識
 - 5. 特許權等의 保護 對象
 - 6. 特許廳에 있어서의 審查節次
 - 7. 審判制度의 基礎知識
 - 8. 權利의 發生에서 消滅까지
 - 9. 特許權者의 義務
 - 10.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早期審查節次
 - 11.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審判事件에
 있어서 早期審理의 節次等
 - 12. 法改正 動向
- I -2 國際出願의 活用

- 1. PCT의 概要
- 2. PCT의 意義
- 3. PCT 締約國一覽
- 4. 在來절차와 PCT 절차와의 比較
- 5. 日本特許廳에 한 國際出願의 처리
- 6. FAX를 利用한 國際出願의 提出
- 7. 國際出願關係手數料
- 8. 優先權書類의 提出節次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前號에서 계속〉

3) 審判請求에서 審決까지

審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查定系의 審判과 當事者系의 審判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각기 그 節次를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查定系의 審判은 審查의 繢審으로 持稱되는 것으로 그 節次에 있어서는 審查의 規定이 準用되며 또한 審查에 있어서 行해진 節次는 審判에 있어서도 그 効力を 갖게된다.

審判請求에서 審決까지의 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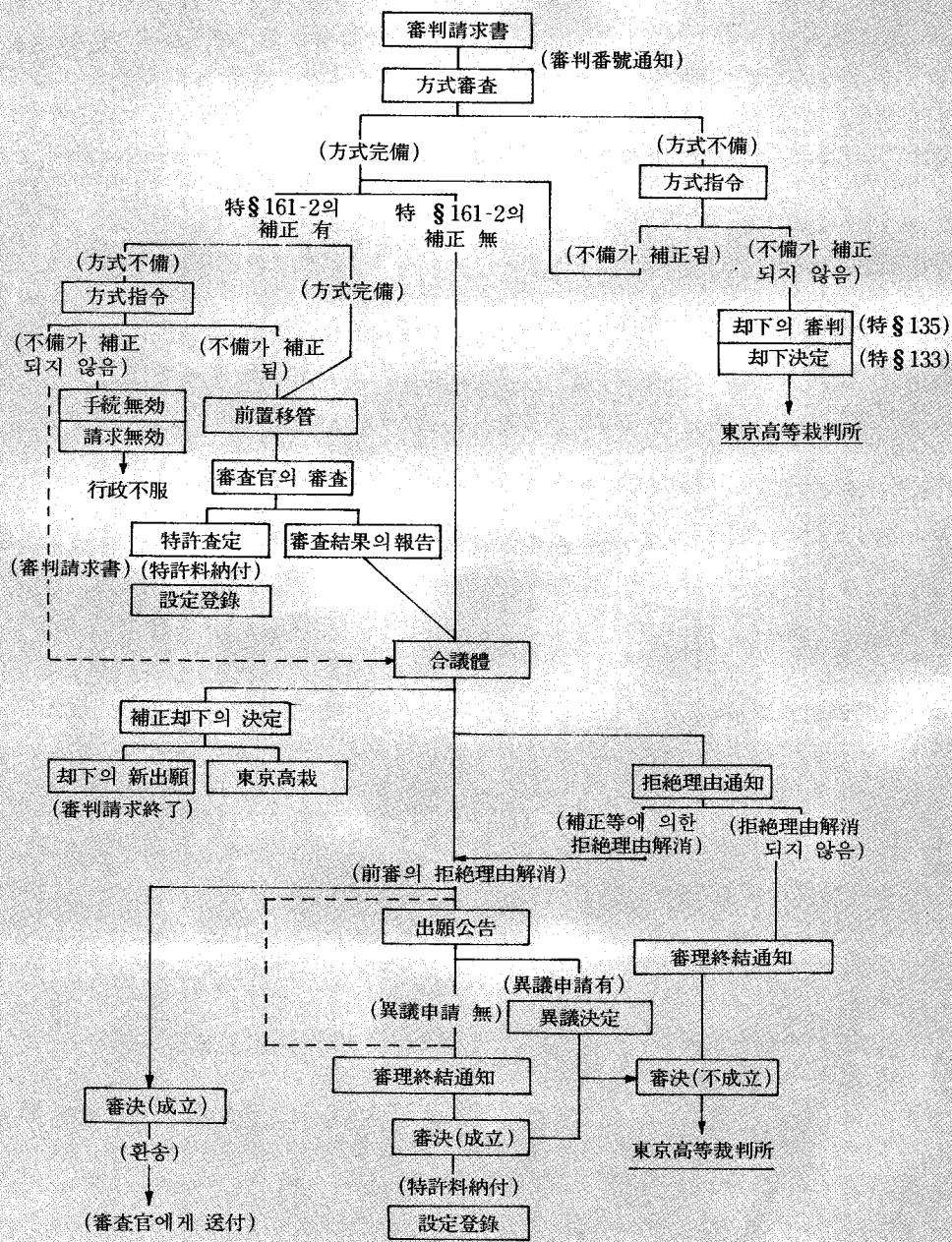
- (1) 審判請求의 方式(特131條, 132條, 195條, 特施則 1條~4條, 46條, 様式 26)

- 審判請求書를 特許廳長官에게 提出
 必要的 記載事項
 必要 添附書類
 手數料의 納付
 審判節次의 主體
 ① 當事者能力과 節次能力
 ② 當事者…(請求人 및 權利者)
 ③ 共同審判
 ④ 代理人…(法定代理人, 委任代理人, 復代理人, 特許管理人 等)
 審判의 請求期間(特124條)
 (2) 審判番號의 附與 및 審判官의 指定과 그 通知(特137條, 特施則 48條)
 (3) 予告登録(公報掲載) (特登令 3條, 27條, 特193條)
 (4) 特許(登錄)에 關하여 登錄된 權利를
 갖고 있는 者에 대한 通知(特123條 3項)
 (5) 審判請求書의 方式調査와 補正命令 및
 尋問 (特17條, 133條, 134條)
 (6) 審判請求書의 決定에 의한 却下(特
 133條)
 (7) 審判請求의 審決에 의한 却下(特 13
 5條)
 (8) 審判請求書副本을 被請求人에게 送達
 (特 134條)
 (9) 審判事件答辯書의 提出과 그 副本을
 請求人에게 送達(特134條, 特施則 47條, 樣式
 27)
 (10) 當事者에 對한 尋問과 변박서의 提出
 (特17條, 134條, 特施則 9條, 9條의 2, 11條,
 14條, 樣式2, 3, 4, 5, 6, 8)
 (11) 審判官의 除斥 또는 忌避의 申請과
 그 決定(特140條, 142條, 143條)
 (12) 口頭審理와 書面審理(審判에 있어서
 審理의 方式) (特136條, 145條, 146條, 147條,
 特施則 51條~53條)
 (13) 證據調查 및 證據保全(特150條, 151
 條, 169條, 170條, 特施則50條, 53條, 56條)
 (14) 職權에 의한 審理(特152條, 153條)
 (15) 審判參加申請과 그 決定(特17條, 14
 8條, 149條, 195條, 特施則 49條, 55條, 57條,

- 樣式 28)
- (16) 審判節次의 中斷 또는 中止와 繼行
 (特21條~24條, 特施則 17條)
 (17) 審判節次의 中止(特 168條)
 (18) 審判의 併合과 分離(特 154條)
 (19) 審判請求의 取下(特 155條, 193條,
 特施則 54條, 特登令 54條)
 (20) 審理의 終結通知(審理의 再開) (特
 156條)
 (21) 審決(審判의 終了) (特 157條, 167條)
 ① 審決에 의한 終了
 (i) 審判請求를 不適法한 것으로서 却下
 한 審決
 (ii) 請求를 容認한 審決
 (iii) 請求를 棄却한 審決
 ② 審判請求의 取下에 의한 終了
 ③ 審決의 効力
 (i) 審決의 確定
 (ii) 審決의 對世的 効力
 (iii) 一事不再理의 原則
 (22) 審判費用의 負擔(特169條)
 (23) 確定審決의 登錄(公報掲載) (特登令
 1條, 16條, 特193條)
 (24) 物件의 返還(特施則 15條)
 (25) 審判費用額의 決定請求와 그 決定
 (特169條, 170條, 特施則 56條)
 (26) 其他
 審查前置制度 (特 161條의 2~161條의
 4)
 补正할 수 있는 期間의 制限 (特 17條,
 17條의 2, 17條의 3)
 4) 再審制度
 (1) 再審制度의 意義
 再審制度란 審決이 確定된 後에 있어서도
 一定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不服을 申請하여
 確定審決을 번복할 수 있는 制度이다. (特
 171條)
 再審은 本來 訴訟法上의 概念으로서 判決이
 確定된 後에 特別한 理由에 근거하여 認定되는
 非常의 不服申請方法이다.
 訴訟節次의 重大한 欠點等 一定한 理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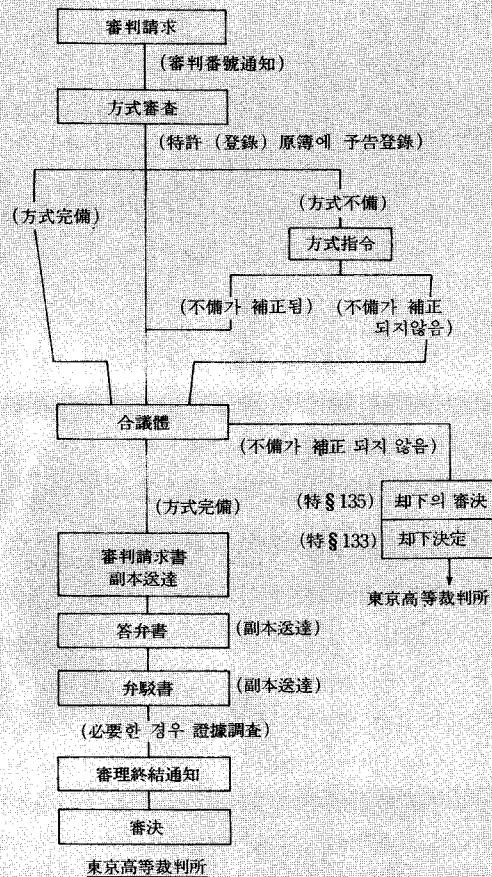
審判請求에서 審決까지의 節次圖

一. 拒絶査定不服審判의 경우



(注) 意匠登録에 대해서는, 出願公告制度가 없음.

二. 無効審判等의 경우



있는 경우에限하여 再審의請求를 認定하고 있다. 特許法上으로도 確定審決을 不變의 것으로 하는 것이妥當하지 않은 경우와同一한 이유로서, 特許法에도 再審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審判事件의 確定審決 및 再審의確定審決에 對해서도 再審의理由가 있으면 再審을請求할 수 있다.

(2) 再審의理由

再審을請求할 수 있는理由로서는 審判節次에重大한暇疵가 있는 때, 審決의基礎로된 審判資料에重大한暇疵가 있는 때, 審判의請求人, 被請求人이共謀하여, 第3者的利益을害할目的으로 審決을 받은 경우等이다. 이理由에 대해서는 民事訴訟法 第420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21條가準用된다. (特171條·172條)

(3) 再審의請求人

再審의請求人은 審決을 받은當事者이다. 詐害行為에의하여 審決을 받게된경우에當該第3者は 그確定審決에對한再審請求의適格을취득한다. (特172條第1項)

(4) 再審請求期間

再審을請求할 수 있는期間을無制限으로하는것은法秩序上문제가있기때문에이請求期間은請求人이再審의理由를알게된날로부터30日以內, 審決이確定된後3年以内로제한하고있다.(特173條)

(5) 再審節次

再審節次는審判節次에準하지만審判의種類에따라準用規定을달리하고있다. (特174條)

(6) 再審에 의해回復된特許權의效力制限

(特175條, 176條)

5) 判定

(1) 判定制度의意義

判定이란特許發明의技術的範圍, 登錄實用新案의技術的範圍, 登錄意匠 및 이것에類似한範圍 및 商標權의效力에관하여特許廳에對해特許廳의判斷을求하는制度이다. (特71條第1項, 實26條, 意25條, 商28條第1項).

特許發明, 登錄實用新案의技術的範圍는出願書에添附한明細書의特許 또는實用新案登錄의請求의範圍에근거하여定하고, 登錄意匠의範圍는出願書 및出願書에添附한寫眞, 모형 또는見本에의해나타난意匠에의거하여定하여야한다. 또登錄商標의範圍는出願書에添附한書面에表示된商標에의거하여定해야한다. (特70條, 實26條, 意24條, 商27條第1項)

判定은 舊法의 權利範圍確認審判에 비견되는 것이지만 權利範圍確認審判과의 커다란 相違點은 判定이 여하한 法律의 拘束力を 갖지 않고 있음을 明確히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特許廳의 判定은 단순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는 것도 이러한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判定을 求하는 制度의 運用은 舊法의 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와 거의 同一한 方式으로 行해진다.

다시말해서 判定의 請求는 一定한 技術內容이 特定 特許權의 技術的範圍에 屬하는 가의 여부에 대한 判斷을 求하는 경우로 限定되며 그 判斷에 있어서는 對審의인 構造를 취하고, 또 指定된 審判官에게 除斥原因이 있는 경우에는 除斥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特施令 3條)

(2) 審理節次

① 判定請求가 있는 때에 特許廳長官은 3名의 審判官을 指定하여 그 判定을 하도록 해야 한다. (特 71條 2項, 特施令 5條)

② 判定의 企正을 期하기 위하여 審判官의 指定에 있어서 特許廳長官은 그 判定事件에

關係있는 審判官을 指定해서는 아니된다. 또 指定된 審判官에 故障이 있는 때에는, 特許廳長官은 그 指定을 解하고 다른 審判官을 補充하여야 한다. (特施令 3條, 4條)

③ 特許廳長官은 指定된 審判官中 1名을 首席審判官으로 指定해야 한다. 首席審判官은 그 判定事件에 관한 事務를 총괄한다. (特施令 6條)

④ 判定의 審理는 원칙적으로 書面審理에 의하여야 하지만, 首席審判官은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또는 職權으로 口頭審理를 할 수도 있다. (特施令 8條, 9條)

⑤ 當事者가 申請하지 않은 理由에 대해서도 審理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首席審判官은 審理結果를 當事者에게 通知하고相當한期間을 指定하여 意見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特施令 10條)

⑥ 判定의 審理가 終了된 때는 一定한 事項을 記載한 文書를 作成하고 審判官이 記名捺印한다. 特許廳長官은 그 文書의 謄本을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特施令 11條) <계속>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안내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개인
발명인·중소기업자로서 아래 발
명·고안을 보유한 자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되
었을 것
—당해 권리가 시작품 제작 지원연
도말까지 존속되는 것

◎ 신청기간 : 1990년 1월 1일~31일

◎ 신청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중앙종묘빌딩)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진흥부
(전화 : 557-1077~8)

◎ 보조금교부기준 : ▲ 영세발명인 및 학생 발
명은 제작비용의 전액범위 내
▲ 개인발명인은 제작비용의 80% 범위 내

▲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50%범위 내

◎ 보조금교부한도 : 1인당 1,000만원 이내

제18회 제네바국제발명전 참가안내

◎ 주 관 : 한국발명특허협회
◎ 기 간 : 1990. 3. 30 ~ 4. 8 (10일간)
◎ 장 소 : 제네바시전시회의센타(Palexpo)
◎ 출품대상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 출품방법 : 직접참가전시, 위탁출품전시
◎ 출품범위 : 발명(고안)·신기술로서 그 제품
이나 사진, 도면

◎ 신청서 배포 및 접수

▲ 배포 및 접수 : 1990. 1. 1 ~ 20일

▲ 신청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진흥부

Tel : 557-1077~8, 567-8267

▲ 신청방법 : 소정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
신청(도착분에 한함)